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90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김소희·엄태영·김상훈

주호영 · 서지영 · 이헌승

안상훈 · 이양수 · 김예지

김위상 • 곽규택 • 김기현

권영세 • 박덕흠 • 김성원

김형동 • 박형수 • 김선교

박정하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면서 현행법은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축소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육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출산육아지원시설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영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2.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u><신 설></u> | 제99조의14(출산육아지원시설세 |
|--------------------|---|
| | 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운영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2.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
| | <u>령으로 정하는 시설</u> |